

국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법률 소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개정령/대통령령 제14,727호)

최 응 기

(국립국어연구원 연구관)

지난 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4,883호) 개정을 놓고 국회에서 있었던 논란은 문화 예술계에 커다란 쟁점이 되었지만, 국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성문화하였던 것은 어문 정책 역사에 있어 기억할 만한 경사였다(새국어생활 제4권 제4호 참고).

어떤 법률이든지 기본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정이 되면 반드시 시행령도 만들어 지거나 개정이 되게 마련이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도 기본법이 바뀔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국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 예술의 개념에 국어 발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국어'는 모든 문화 예술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국어 연구를 대표하는 '국립국어연구원장'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영 제3조).

개정령은 국어 발전과 국어 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모두 '2장 12조'로 만들었는데, 크게 '국어의 발전 및 보급'과 '국어심의회'로 나누어 시행령을 만들었다.

영 '제3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에 관한 조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는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국어'는 국민 정신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이므로 국가 발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국가에서 이를 계획하고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특히, '국어 어문 규

법의 제정 및 개정'은 기본법의 '어문 규범의 준수 조항'과 연계되므로 반드시 국가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12조'는 '한글날 행사'에 관한 내용으로 그 동안 한글날 행사를 정부 관계자에 따라 중앙 부처, 서울시, 민간 단체 등에서 치루어 왔으나, 이 개정령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는 한글날 행사를 반드시 정부 기념일로 삼아 행사를 치루도록 명문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한글날이 속해 있는 주간은 '한글만을 사용하는 주간'으로 선포하여, 이 기간 중에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각종 문서, 일간 신문, 기타 간행물의 전면 또는 일부면을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글 우수성 선양 사업에 민간 단체도 참여하도록 하였다.

'제13조'는 '세종문화상 시상'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성군인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민족 문화 창달을 위해서 마련된 '세종문화상'을 법률에 근거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영 '제4장 국어심의회'에 관한 내용은 그 동안에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나, 기본법이 없이 만들어졌으므로 심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되어 있었다. 아울러 새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시 그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였다. 조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는 '국어심의회'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과거에는 어문 규범과 한자 사용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과학 기술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국어의 발전과 보급에 관한 영역도 점차 확대되어 국어의 정보화와 과학화 기능도 심의토록 하였다. 그러나 국어 교과용 도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어심의회에 부의(附議)하도록 하였으나,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어심의회 위원이 교과서 연구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조정하였다.

'제15조'는 '국어심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국어심의회 위원 자격을 과거에는 국어국문학과 언어학 전공자로 한정하였으나, 관련 분야까지 확대하여 참여 범위를 넓혀 놓았다. 위원의 인원수와 임기도 명시하였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도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정하였다.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와 '제17조 회의'에 관한 내용은 과거에 있던 것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 위원회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제18조'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업무 성격에 따라 5개 분

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별로 업무를 심의토록 하였다. 분과위원회에는 과거에 그 기능이 애매모호한 '학술용어분과위원회'를 없애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제19조'는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기관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20조 간사와 서기', '제21조 수당과 여비', '제22조 운영 세칙'에 관한 내용은 과거에 있던 것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세부적인 것을 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은 '95년 7월 13일자 대통령령 제14,727호로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 중 '국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만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 제14,727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개정령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조(기능)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원차관, 통일원차관, 외무부차관, 내무부차관, 교육부차관, 통상산업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공보처차관, 정무차관(제2), 국립국어연구원장, 대한민국예술원회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및 문화재위원회위원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

제11조(국어발전계획의 수립)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
2. 국어의 정보화 및 과학화
3.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

제12조(한글날 행사 등)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한글날 기념 행사를 행하고, 한글날이 속하는 주간을 “한글만을 사용하는 주간”으로 선포하여 이 기간 중에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각종 문서·일간신문 기타 간행물의 전면 또는 일부면을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세종문화상의 시상) ① 국가는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세종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국어심의회

제14조(기능)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2. 표준어 규정에 관한 사항
3. 한자 사용에 관한 사항
4. 국어의 정보화 및 과학화에 관한 사항
5. 국어 순화에 관한 사항
6.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사항
8.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국어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
9. 기타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한글분과위원회
2. 한자분과위원회

3.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

4. 표기법분과위원회

5. 국어순화분과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정수와 배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1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심의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당해 분야의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문화체육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와 서기가 이를 처리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